

의안번호	2211361
의 퇴 인	서천호의원
회 답 일	2025.7.9.
추계번호	25D367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 (정의)	“군용항공기”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및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이 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를 확대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2조(정의)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국방부는 5년마다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한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한 지역을 소음 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표 1] 소음영향도 기준 및 지급기준액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비행장	대도시지역	95 이상 (웨클)	90이상 95미만 (웨클)	85이상 90미만 (웨클)
	기타지역			80이상 90미만 (웨클)
사격장	대형화기	94이상 (dB(C))	90이상 94미만 (dB(C))	84이상 90미만 (dB(C))
	소형화기	82이상 (dB(A))	77이상 82미만 (dB(A))	69이상 77미만 (dB(A))
지급기준액 (1인)		월 60,000원	월 45,000원	월 30,000원

자료: 국방부

[표 2] 보상금 감액 기준

실사격일수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	실거주기간
• 사격이 없는 경우: 미지급 • 1일 이상 8일 미만: 3분의 1 지급 • 8일 이상 15일 미만: 3분의 2 지급 • 15일 이상 : 전액 지급	• 1989년 이전: 감액 없음 • 1989년~ 2010년: 30% 감액 • 2011년이후: 50% 감액	• 부대 정문으로부터 100km 이내: 30% 감액 • 부대 정문으로부터 100km 초과: 100% 감액	현역병 복무,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교도소 등 수용 기간 등 소음대책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자료: 국방부

□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42만 3,382명에 대해 1,200억원(1인당 월평균 2만 2,170원)의 보상금이 지급됨

[표 3] 보상금 지급 현황

구 분	2022			2023			2024		
	지급 인원(명)	지급 금액(억원)	월평균 지급액(원)	지급 인원(명)	지급 금액(억원)	월평균 지급액(원)	지급 인원(명)	지급 금액(억원)	월평균 지급액(원)
전체	415,842	1,176	23,570	423,757	1,174	23,090	423,382	1,200	23,620
비행장	399,921	1,150	23,970	407,378	1,144	23,410	404,534	1,150	23,680
사격장	15,921	26	13,470	16,379	30	15,130	18,848	50	22,170

주: 1. 2022년부터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2022년 지급액은 법 시행 (2020. 11. 27.) 이후 2021년 발생 소음에 대한 보상금액을 포함됨

2. 2024년 보상대상에 영평훈련장이 신규로 포함 (3,243명)됨

자료: 국방부

□ 개정안은 보상 대상이 되는 “군용항공기”의 정의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이 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도 포함하도록 하여 소음영향도에 따라 보상 대상 확대 또는 보상금액의 증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국방부에 따르면 사업관리기관이 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도 및 보상대상 주민 수 등에 대해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전·훈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것으로, 민간업체의 연구·시험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 운행은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음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